#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3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전혜숙·조승래·오영환

김진표 • 양이원영 • 양향자

윤후덕 • 민병덕 • 정필모

고용진 · 김병기 · 우원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들은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며 연구역량을 키 위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이라는 이중 지위를 가진 연구 활동종사자로서 활동함.

그런데 같은 연구활동종사자라 하더라도 연구원 등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아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만, 대학생·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그 특성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

구원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3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이하 "연구활동종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했 혅 개 정 아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48조의3(연구활동종사자에 대 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종사자(이하 "연구활동종 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 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다.